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거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 (붙임1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 ①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②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 ③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②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 ④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①,②)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 예약방법(택1) : 1)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 불가

**【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방법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b>①</b>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b>(필수)</b>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서식4호)	예약후 방문
	<b>②</b>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b>(필수)</b>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4호)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b>③</b>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b>(필수)</b>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4호)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온라인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b>①</b>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b>(필수)</b> 통합위임장(서식4호)	온라인
	<b>②</b>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b>(필수)</b>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중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b>③</b>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b>(필수)</b>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③ 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b>(필수)</b>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온라인
④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2. 확인지급 신청 · 절차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 접수 후 기본정보 · 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상공인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온라인 신청 (2. 1. ~ 2. 26.)**

신청 대상	<p>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p> <p style="padding-left: 20px;">③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p> <p>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p> <p style="padding-left: 20px;">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p> <p style="padding-left: 20px;">③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p> <p>③ 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p> <p>④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p>
----------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예약후 방문신청(2. 16. ~ 2. 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b>신청대상</b>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①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②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

① (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②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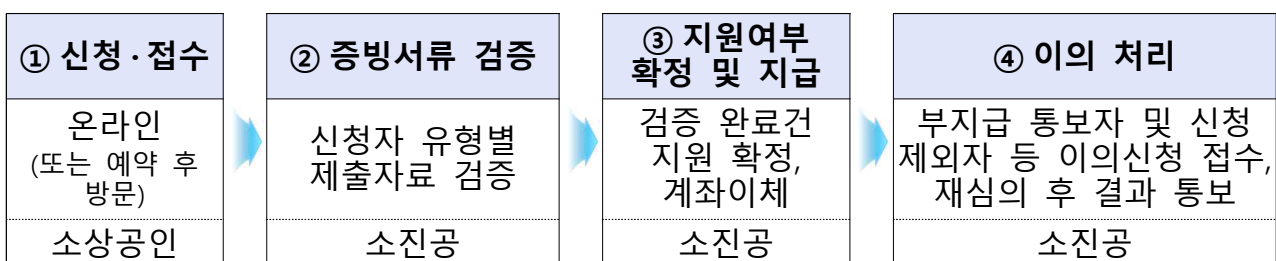
-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 처리 (이의신청 : 별도안내(3월중))**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 3.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 상**
  -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2.1. ~ 26.)
    -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일~ 2주 소요)
    -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붙임 1

##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 개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 지원대상 및 금액

#### ①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sup>①</sup> 및 상시근로자 수<sup>②</sup>가 소상공인에 해당
  -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②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③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 11. 24. ~ '21. 1. 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여, '21. 1. 6.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붙임 2**

**확인지금 신청 서식**

**필 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 <제1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 ..... i
-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ii
- <제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iii

**해당 시**

- <제4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 ..... iv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 <제5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반환신청서 ..... v





##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일치한 신청정보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2.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3.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4.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
2. 제공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3.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4.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5.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사항

1.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금융기관에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금융기관에서 아래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위와 같이 유의사항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①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③ 버팀목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②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 [중복수혜금지 대상]

기관	명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은 해당 지원금 수령자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제출 시에만 지급 가능(세부내용 고용노동부 문의)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④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반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업체명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반환금액 (√ 표시)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input type="checkbox"/>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반환 사유 (√표시)	<input type="checkbox"/>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반환 전 필수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1. 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버팀목자금을 반환하더라도, 해당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 타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버팀목자금을 반환한 이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기타의 반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버팀목자금 반환에 따른 상기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처리 절차	<p><b>1단계</b>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 신청</p> <p><b>2단계</b> : 문자 수신 당일 은행 영업시간(09~16시) 내에 기지원 받은 버팀목자금(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p> <p><b>3단계</b>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확인서 출력</p>
----------	--

[별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2021.01.0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 ①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sup>①</sup> 및 상시근로자 수<sup>②</sup>가 소상공인에 해당
  -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③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b>300만원</b>	<b>200만원</b>	<b>100만원</b>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제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②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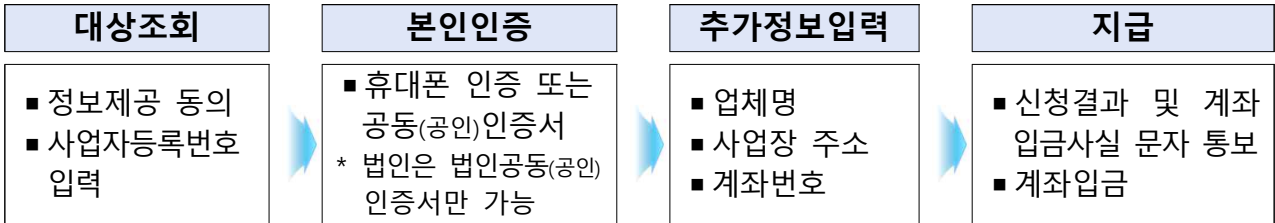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 4.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